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682 |
|----------|------|

2026년 6월 17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년 5월 26일, 이호진 의원(찬성자 10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6년 5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6년 6월 17일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호진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,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,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1)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(이용료) 감면 근거 마련

- 시설 입장료(이용료)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,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

## ■ 주요골자 검토의견

- 안 제5조의2제3항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3)에 따른 임산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,
  - 현행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4)에서 임산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설치·관리하는 문화·체육시설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(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)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,
  - 현재 저출생 현상의 심화,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음.
- 다만, 본 개정안의 조문 구성 및 감면 적용 방식 등의 규정 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와 미비점이 발견되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임.
- 먼저, 본 개정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)」 제5조의2제3항제3호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현행 조례상 “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” 문구가 포함된 조

3)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설치·관리하는 문화·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(이하 "입장료 등"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항은 제3호가 아닌 제4호이고,

- 현행 제5조의2제3항제3호는 “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”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 대상 조항을 제5조의2제3항제4호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(〔표 2〕 참조).

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5조의2 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 ① - 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-2. (생략)

3.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

4. 18세 이하인 사람,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

5. - 6. (생략)

④ - ⑥ (생략)

- 다음으로, 본 개정안은 조례 본문만을 수정하고 실제 구체적인 감면율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 [별표 3](사용료 감면 범위)의 내용(붙임 참조)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.
- 따라서, 현행 조례 제5조의2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“별표 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본문 개정만으로는 현장에서 임산부에게 적용할 감면율이 부재하여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.
- 또한, 현행 조례 [별표 3]의 다른 감면대상자(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등)의 경우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다둥이 행복카드 등 공식적으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만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,

- 본 개정안은 임신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빙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현장 확인이 불가한 상황임.
  - 따라서 조례의 개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「모자보건법」 제9조5)에 따른 모자보건수첩,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, 임신부 앱카드6) 등 공식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명시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음.
- 즉, 본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정 대상 조항 번호의 오류 정정과 [별표 3]의 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항목에 ‘임산부’ 및 ‘임산부 탑승 차량’을 각각 추가 신설하고 공식 증빙 제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, 타 유사 대상(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)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감면율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([표 2] 참조).

[표 3] 안 제5조의2제3항 및 [별표 3] 수정안 예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의2 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 ①·② (생략)   | 제5조의2 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 제5조의2 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| ③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략)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
| 4. 18세 이하인 사람, 65세 이   | 3.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|

5) 「모자보건법」 제9조(모자보건수첩의 발급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.  
 ② (생략)

6) 서울온(ON)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통합 모바일 앱으로,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하나로 합쳐 전자증명서 발급, 모바일카드, 공공시설 이용 등을 한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, 다둥이행복카드·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급 ▲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 ▲공인증개사 자격·증개사무소 등록 확인 ▲서울시 디지털 증서(임명장·표창장 등) 관리 ▲도서관·문화·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이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.



| 감면대상  | 감면율 (%)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는 차요금이 50) |

※ 비교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| 감면대상   | 감면율 (%)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는 차요금이 50) |

※ 비교: (개정안과 같음)

- 한편,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, 조례 개정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시설 이용 현황 중 임산부를 별도로 분류한 기초통계가 부재하고,
  - 정책 시행 이후 임산부 입장객 유입 규모와 이용 빈도 등 구체적인 수요 변화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 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나,
  - 임산부 본인에 대한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물재생시설 내 이들 시설의 주 이용객이 주로 주변지역

주민들인 점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.

- 참고로, 제336회 정례회에 본 개정안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총 7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음.

[표] 제336회 정례회에 유사 내용으로 발의(이효진 의원)된 일부개정조례안 현황

| 조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건번호 | 발의일자       | 소관상임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| 3669 | 2026.5.26. | 행정자치위원회  |
|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| 3670 | 2026.5.26. | 주택공간위원회  |
|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       | 3671 | 2026.5.26. | 환경수자원위원회 |
|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| 3672 | 2026.5.26. | 보건복지위원회  |
|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| 3673 | 2026.5.26. | 보건복지위원회  |
|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| 3674 | 2026.5.26. | 교통위원회    |
|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3675 | 2026.5.26. | 환경수자원위원회 |

[붙임]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[별표 3]

[붙임]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[별표 3]

[별표 3] <개정 2025. 9. 29.>

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

1. 체육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

나. 기타

| 감면대상  | 감면율 (%) |
|---|------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  | 100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|
|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       | 50      |
|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| 50      |
|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6.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7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8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9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| 50      |

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## 2. 주차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

나. 기타

| 감면대상   | 감면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) |

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**

**7. 수정안의 요지 :**

- 본 개정안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정 대상 조항 번호의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[별표 3]의 ‘1. 체육시설 나. 기타’ 및 ‘2. 주차시설 나. 기타’ 감면 대상 항목에 ‘임산부’ 및 ‘임산부 탑승 차량’을 각각 신설하고 공식 증빙 서류 제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, 타 유사 대상(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)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함.

**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
**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<br>3682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6년 6월 17일  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안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개정 대상 조항 번호를 안 제5조의2제3항제4로 바로잡고, [별표 3]의 '1. 체육 시설 나. 기타' 및 '2. 주차시설 나. 기타' 감면 대상 항목에 '임산부' 및 '임산부 탑승 차량'을 각각 신설하고 공식 증빙 서류 제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, 타 유사 대상(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)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%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7)에 따른 임산부를 추가함.(안 제5조의2제3항제4호)
- 나. [별표 3]의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감면 대상 항목에 '임산부' 및 '임산부 탑승 차량'을 추가하고, 각각 50% 감면율을 적용토록 함.(안 [별표3])

7)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호 번호를 제4호로 하고, 본문 중 “임산부 본인”을 “임산부”로 한다.

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[별표 3]

#### 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

##### 1. 체육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

##### 나. 기타

| 감면대상  | 감면율 (%) |
|---|------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  | 100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  | 100     |
|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  | 50      |
| 7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(단,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) | 50      |
| 8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| 50      |
| 9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| 50      |
| 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
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## 2. 주차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

나. 기타

| 감면대상   | 감면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) |

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

|   |    |
|---|----|
| 한함)   |    |
| 8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|
| 9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

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## 2. 주차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

### 나. 기타

| 감면대상  | 감면율 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차요금의 경우 50) |

※ 비고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|  |    |
|--|----|
| 례」에 따른 입산부(단, 입산부 애플카드 등 입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       |    |
| 8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|
| 9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|
| 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

※ 비고 : (개정안과 같음)

## 2. 주차시설

가. (개정안과 같음)

### 나. 기타

| 감면대상  | 감면율 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입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입산부 애플카드 등 입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차요금의 경우 50) |

※ 비고: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제4호 중 “발급대상자”를 “발급대상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표 3]

#### 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

##### 1. 체육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

##### 나. 기타

| 감면대상  | 감면율 (%) |
|---|------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  | 100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  | 100     |
|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| 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  | 50      |
| 7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(단,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) | 50      |
| 8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| 50      |
| 9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| 50      |
| 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                 | 50      |

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## 2. 주차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

나. 기타

| 감면대상   | 감면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) |

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|---|----|---|----|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|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|---|----|---|----|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--|
| <p>제5조의2 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18세 이하인 사람,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다동이 행복카드 <b>발급대상자</b>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 <p>[별표 3]<br/>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</p> <p>1. 체육시설<br/>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<br/>나. 기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감면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감면율 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/tr> <tr> <td>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/tr> <tr> <td>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 (신 설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7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8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9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고 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</p> | 감면대상    | 감면율 (%) 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| 100 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| 100 |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| 50 | 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| 50 | (신 설) (신 설) |  | 7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| 50 | 8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| 50 | 9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 <p>제5조의2 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b>발급대상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</b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<br/>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</p> <p>1. 체육시설<br/>가. (현행과 같음)<br/>나. 기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감면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감면율 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/tr> <tr> <td>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/tr> <tr> <td>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7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(단, 임산부 엘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8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9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tr> <td>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고 : (현행과 같음)</p> | 감면대상 | 감면율 (%) 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| 100 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| 100 |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| 50 | 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| 50 | 7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(단, 임산부 엘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) | 50 | 8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| 50 | 9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| 50 | 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| 50 |
| 감면대상   | 감면율 (%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 | 100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 | 100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(신 설) (신 설)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7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8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9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감면대상   | 감면율 (%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 | 100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 | 100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6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7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(단, 임산부 엘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8. 65세 이상인 사람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9. 18세 이하인 사람 (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| 1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  | 50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|   |    |   |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  |

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2. 주차시설

가.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로 하  
되 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  
할 수 있다.

나. 기타

| 감면대상  | 감면율 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(신 설) (신 설)</b>  |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) |

※ 비교: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2. 주차시설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기타

| 감면대상   | 감면율 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
| 1.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, 공무수행차량,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(발행일로부터 1년간)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)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열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                | 100<br>(단,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) |

※ 비교: (현행과 같음)